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시청각물 분야에서 두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확대하며,  
양 당사국의 시청각 산업 및 문화적·경제적 교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청각물  
공동제작의 확대와 촉진을 희망하고, 그리고  
이러한 교류가 양 당사국 간 관계의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시청각 공동제작물이란 권한있는 당국이 공동으로 승인한 사업에 따라 한쪽 당사국  
의 하나 이상의 공동제작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공동제작자와의 협력으  
로 만든 시청각물을 말하며, 제5조가 적용되는 시청각물을 포함한다.

시청각물이란 매체물에 구현된 영상의 집합, 또는 영상 및 음성의 집합을 말하며, 영  
화, 텔레비전 및 비디오 녹화물, 애니메이션 및 디지털 형식의 제작물을 포함한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부록에서 각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 있는 것으로 지정된 당국  
을 말한다.

공동제작자란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하나 이상의 한국 국민 또는  
시청각 제작 회사 또는 하나 이상의 뉴질랜드 국민 또는 시청각 제작 회사, 또는 제5  
조에 따른 비당사국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그 비당사국의 공동제작자를 말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 또는 그 승계법률의 의미 내에서의 한국 국민  
또는 한국 영주권자,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시민 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그리고

2008년 협정이란 2008년 9월 29일 웰링턴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 제 2 조 국내 시청각물로서의 인정 및 혜택의 부여

1. 이 부속서에 따라 제작된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현재 발효중이거나 향후 발효될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국내 시청각물에 부여되거나 부여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완전한 자격을 가진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1항에 언급된 국내 법과 규정, 그리고 제1항에 언급된 혜택에 관한 세부사항의 사본을 제공한다.
3. 시청각 공동제작물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내에서 부여될 수 있는 모든 혜택은, 그 밖의 모든 관련 국제 의무를 조건으로, 그 당사국의 관련 조치에 따라 그러한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 공동제작자에게 부여된다.

## 제 3 조 사업의 승인

1. 이 부속서에 따라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의 공동 승인이 요구된다. 승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승인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한다. 어떠한 공동제작자도 공동 경영, 소유 또는 지배 관계가 없어야 하며,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 자체에 내재한 한도에서는 예외로 한다.
2. 승인 절차는 신청시 그리고 촬영 착수 전에 이루어지는 승인, 그리고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완성과 이의 배급 전에 이루어지는 검토로 구성된다.
3. 그러한 승인의 신청은 부록에 규정된 요건들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에 합치한다. 신청을 고려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은 이 부속서 및 부록에 합치되는 한도에서 각국의 정책 및 지침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 법과 규정상 가능한 한도에서 시청각 공동제작 승인 신청의 승인, 거부, 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환한다.

## 제 4 조 기여도

1. 각 시청각 공동제작에 있어서 다음은 각국의 재정적 기여와 합리적으로 비례한다.
  - 가. 공동제작자의 실연, 기술, 기능 및 창의적 참여도, 그리고
  - 나. 각 공동제작자 국가에서의 제작비 지출
2. 시청각물 공동제작자 각각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공동제작자 간의 약정으로 결정된다. 방송 프로그램(방송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 외의 공동제작에 있어서 이 기여도는 시청각물의 최종 제작비용의 20에서 80퍼센트 사이가 된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 기여도는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 이상이 된다.

## 제 5 조 비당사국과의 공동제작

1. 어느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유지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비당사국의 공동제작자와 공동으로 제작될 시청각물을 이 부속서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물로 공동 승인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승인은 비당사국 공동제작자의 기여도가 한국과 뉴질랜드 공동제작자의 개별 기여도 중 적은 기여도 이하인 제안으로 한정된다. 이에 더하여, 비당사국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및 창의적 기여도 모두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규제 또는 정책 체계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한다.
3. 모든 비당사국 공동제작자는 비당사국과 어느 한쪽 당사국 간에 시행 중인 공동제작 협정의 조건에 따라 시청각물의 제작을 위하여 충족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 제 6 조 참여

1. 시청각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인은 한국 및 뉴질랜드의 공동제작자, 또는 제5조에 따른 비당사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당사국의 공동제작자이다.
2.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 가. 대본 또는 채정이 요구하는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제한된 수의 실연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예외적인 경우, 다른 국가로부터 제한된 수의 기술 인력이 참여할 수 있다.

### 제 7 조 제작

- 1.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한국 또는 뉴질랜드에서, 또는 제5조에 따른 비당사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촬영되고 후반 제작된다.
- 2.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포함된 촬영장면의 최소 90퍼센트는 그 시청각물을 위하여 특별히 촬영되거나 창작된다.

### 제 8 조 현지 촬영

- 1. 권한 있는 당국은 참여 중인 공동제작자의 장소, 국가 또는 촬영지 외의 장소, 국가 또는 촬영지에서의 현지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 2.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 따라 현지 촬영이 승인되는 경우, 현지 촬영이 진행되는 국가의 시민은 군중 예술가, 단역 또는 현지 촬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추가 피고용인으로서 고용될 수 있다.

### 제 9 조 언어

- 1. 각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한국 또는 뉴질랜드 중 어느 한쪽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또는 제5조에 따른 비당사국 공동제작자가 있는 경우 비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또는 위의 허용된 언어의 조합으로 제작된다.
- 2. 공동제작자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그 밖의 모든 언어 또는 방언으로 된 나레이션, 더빙 또는 자막 처리는 허용된다.
- 3. 개봉 후 영화를 그 밖의 모든 다른 언어로 더빙하는 것은 참여하는 공동제작자의 영역 외의 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다.
- 4. 대본에서 요구되는 한, 각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어떠한 언어로 된 대화 일부도 포함할 수 있다.

## 제 10 조 감사말 및 크레딧

시청각 공동제작물과 이와 관련된 홍보물은 그 시청각물이 “대한민국-뉴질랜드 공식 공동제작” 또는 “뉴질랜드-대한민국 공식 공동제작”임을 명시하는 크레딧 타이틀이나, 적절한 경우, 한국, 뉴질랜드 및 제5조에 따른 비당사국 공동제작자의 참여를 나타내는 크레딧 중 하나를 포함한다.

## 제 11 조 입국 원활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제5조에 따라 승인된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시청각 공동제작물을 제작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한국 또는 뉴질랜드로 입국 및 체류하도록 허용한다.

## 제 12 조 장비 수입

각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법률에 따라 시청각 공동제작물 제작을 위한 기술 장비의 일시적 반입을 수입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허용한다.

## 제 13 조 배급

양 당사국은 국제 시장에서 시청각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청각 공동제작물의 국제 배급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 제 14 조 기술 협력

양 당사국은 컴퓨터 그래픽, 가상 현실 및 디지털 영화 기술과 같은 시청각물 및 관련 분야에서 포괄적인 기술 협력 활동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 제 15 조 제도적 장치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부속서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임시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적절한 부처와 기관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임시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안을 논의한다.

## 제 16 조 분쟁해결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협의 요청서를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협의 요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안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주선, 조정, 중개 또는 비구속적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시 위원회는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결정한다.
3. 제19장(분쟁해결)은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 또는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17 조 부속서 및 부록의 지위

1.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그러나 제8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투자), 제19장(분쟁해결) 및 제20장(일반 규정 및 예외)은 이 부속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부속서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부속서가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우선한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부속서의 모든 규정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부속서의 부록은 이 부속서에 관한 이행 약정을 구성하며, 이 부속서의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된다.
4. 이 부속서의 제19.2조를 조건으로, 부록의 모든 수정은 임시 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부록의 어떠한 수정도 이 부속서의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한다.

5. 부록의 수정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확인되며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 제 18 조 부속서의 발효 및 2008년 협정의 종료

1.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된다.
2. 2008년 협정은 이 부속서의 발효일에 종료된다.
3. 2008년 협정 제19조에 따라, 그리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협정은 2008년 협정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나 그 종료 이전에 완성되지 아니한 모든 공동제작 영화에 대하여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제 19 조 개정

1. 제2항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 간 외교 공한의 교환을 통한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공한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 공한을 통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변경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변경은 공한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 제 20 조 존속 및 종료

1. 이 부속서의 기간은 발효일부터 3년 동안이며, 그 이후에는 추가 3년의 기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해당 3년의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부속서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부속서는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료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나 그 종료 이전에 완성되지 아니한 모든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하여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부록 III-1

###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1.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도록 의도된 시청각물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나. 뉴질랜드의 경우, 뉴질랜드 영화 위원회

2. 부속서의 규정들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동제작자는 촬영을 개시하기 전에 공동제작물 지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에 기재된 문서를 첨부할 것이다.

가. 작품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저작권의 소유에 관한 서류 사본

나. 작품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시놉시스

다. 관련된 각국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도 목록

라. 스튜디오 및 야외 촬영에 대한 주요 촬영 기간 및 장소를 기술한 주간 단위의 작업 계획

마. 상세한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예산

바. 제작 일정

사.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도, 재정적 기여도 및 공동제작자 간 시장 및 이윤 배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안을 명시하는 제작자 간에 체결한 공동제작 계약서, 그리고

아. 사업의 기술적 및 재정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